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(안 제6조 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행 법령상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와 기준이 부재
-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명령 및 처분의 혼선 방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

※ 근거법령 :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사육제한 처분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가축 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켜야 할 중요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축 사육시설의 방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2.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(안 제11조제5항 및 별표 2 개정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※ 근거법령 :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(별표2)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